

##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재판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사건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 1. 분석목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수집하여 매년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발간하여 왔다. (1990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15집 발간)

2008년에는 언론분쟁에 관한 판결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언론분쟁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현황, 주요 쟁점별 실시내용 등을 분석하여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을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전년도 언론관련판결에 대한 분석과 주요 판례를 수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분석보고서는 위원회의 언론분쟁사건 처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일선의 언론종사자들에게는 취재 및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소송을 연구하는 언론학자들에게도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분석과제

#### 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제기현황

2010년도 소송 제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심급별 소송빈도, 상소율, 청구별 소송빈도,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원고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매체별 피고구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 나.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처리결과

2010년도 소송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심급별 처리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 3.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

**2010년도 언론 관련 분석대상 판결은 민사 108건으로  
매체별 빈도는 133건, 청구별 빈도는 217건**

1) 분석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이다.

2) ‘언론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언론(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뜻한다.

3)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을 구하는 청구와 배포나 방영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 그리고 이와 병합된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4) 판결 분석은 확정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1심 사건과 그 상소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경우 위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이 기간 동안에 수집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분석대상 판결들이 심급에 관계없이 모두 개별사건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분석의 대상에는 위 기간 중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5) 이상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판결을 법원도서관에서 검색, 수집한 결과 분석대상 판결은 총 108건이다.

6) 위 108건의 판결 중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언론사별로 보도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 인용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소송사건을 피소된 언론사별로 각각 나누었다. 그 결과 얻어진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별 빈도는 133건이다.

7) 한편, 위 133건은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여러 건의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 청구권별 처리결과를 집계하거나,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133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217건이 모수가 된다.

#### 나. 자료수집 방법

###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 검색 후, 판결문 제공신청 제도 이용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의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조정성립 등은 검색이 되지 않아 수집 및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권 ⑥보도&음성권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권 등으로 하였다. 판결문 수집은 검색 후 법원의 판결문 제공 제도를 이용하였다.

다. 분석항목

분 석 목 록	구체적 분석 항목	
일 반 사 항	01. 판결번호 02. 선고일자 03. 법원명	04. 심급 05. 청구의 종류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8. 대표 원고 분류	09. 공적인물 분류
피 고	10. 사건 피고명 11. 사건 피고구성 12. 매체명	13. 매체별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 체 분 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 구 별 처 리 결 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1. 정정보도 17-2. 반론보도 17-3. 추후보도	17-4. 손해배상 17-5. 기사삭제 17-6. 사과
원 · 상 고 심 결 과	18. 심급별 결과 18-1. 1심 18-2. 항소심	18-3. 상고심 18-4. 파기환송심 18-5. 재상고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0. 조정청구명	21. 조정신청 결과 22. 직권조정 결정액
손 해 배 상	23. 사건 청구액 24. 사건 인용액 25. 매체별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정 정 보 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 론 보 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 도 형 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3. 보도지면(프로그램) 34. 보도위치	35. 보도제목 36. 보도본문 길이

라. 코딩방법

1) 대표 원고 분류

① 원고가 다수인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청구한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지 않고 단체로 분류하였다.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③ 일반인과 공인이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④ 공인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⑤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를 말한다.

예)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 2) 공적 인물 분류

공적 인물이란 연예인 · 정치인 · 기업가 ·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말한다.

## 3) 매체명

①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예) 사건 피고가 ○○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신문, ○○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청구를 하였다면 2개의 매체로 각 코딩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언론인 소속 매체명을 기재하였다.

## 4) 매체별 피고구성

①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 5)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 6) 방송 분류

① 중앙방송의 지역권 뉴스는 지방방송으로 분류하였다.

②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 · 고발로 분류하였다.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④ 「KBS 스페셜」, 「미디어 비평」 등은 교양·정보로 분류하였다.

#### 7) 청구별 처리결과

①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 8) 원고 원심유지 여부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환송후심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 9)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인용액)을 기재하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하였다.

②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인용액)에 합산하였다.

③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 제2장 소송제기 현황

### 1. 심급별 소송빈도

1심 63.0%, 항소심 27.8%, 상고심 7.4%

분석대상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빈도를 살펴보니, 1심이 68건(63.0%), 항소심이 30건(27.8%), 상고심이 8건(7.4%), 대법원의 원심파기에 따른 환송후심이 1건(0.9%), 환송후심에서 상소한 재상고심이 1건(0.9%)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1-1> 심급별 빈도

심 급	빈 도	비 율(%)
1 심	68	63.0
항 소 심	30	27.8
상 고 심	8	7.4
환송후심	1	0.9
재상고심	1	0.9
합 계	108	100

### 2. 상소율

항소율 73.5%, 상고율 53.3%

1심 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대상으로 이후에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68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 50건으로 항소율은 7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30건 중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16건으로 상고율은 53.3%로 나타났다.

<표 1-2> 상소율

심 급	빈 도	상소빈도	상소율(%)
1 심	68	50	73.5
항 소 심	30	16	53.3

### 3. 청구별 소송빈도

####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선호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을 통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체별로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58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45건(33.8%)으로 나타났다.

정정·손배청구와 같이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는 123건(56.7%), 정정보도청구는 67건(30.9%), 반론보도청구는 11건(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피해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청구별 빈도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정	4	3.0
정정/반론	3	2.3
정정/반론/손해배상	6	4.5
정정/반론/손해배상/기사삭제	1	0.8
정정/손해배상	45	33.8
정정/손해배상/기사삭제	2	1.5
정정/손해배상/사과	6	4.5
반론	1	0.8
추후/손해배상	4	3.0
손해배상	58	43.6
손해배상/사과	1	0.8
기사삭제	2	1.5
합 계	133	100

〈표 1-4〉 청구별 빈도(각 청구권별 합산)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 정보 도	67	30.9
반 론 보 도	11	5.1
추 후 보 도	4	1.8
손 해 배 상	123	56.7
기 사 삭 제	5	2.3
사과문 게재	7	3.2
합 계	217	100

#### 4.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침해유형은 명예훼손이 82.4%로 가장 많아**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을 기준으로 침해유형을 분류해보았다. 명예훼손이 89건(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신용훼손은 6건(5.6%), 초상권 침해는 4건(3.7%) 등으로 나타났다.

〈표 1-5〉 침해유형별 빈도

침해유형	빈도	비율(%)
명예	89	82.4
명예 / 초상	1	0.9
명예 / 음성	2	1.9
명예 / 모욕	1	0.9
신용	6	5.6
초상	4	3.7
초상 / 모욕	1	0.9
저작권	2	1.9
기타	2	1.9
합계	108	100

#### 5. 원고유형별 소송빈도

**원고유형은 일반인이 31.5%로 가장 많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34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적인물 17건(15.7%), 공직자 13건(12.0%), 일반단체와 기업이 각각 10건(9.3%) 등으로 나타났다.

〈표 1-6〉 원고유형별 빈도

원고유형	빈도	비율(%)
공직자	13	12.0
공적인물	17	15.7
일반인	34	31.5

원 고 유형	빈 도	비 율(%)
국 가 기관	1	0.9
공공 단체	6	5.6
정 당	1	0.9
일 반 단체	10	9.3
시 민 단체	4	3.7
종 교 단체	1	0.9
기 업	10	9.3
언 론 사	8	7.4
교육 기관	3	2.8
합 계	108	100

##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 매체유형은 일간신문, 인터넷매체, 방송 순으로 나타나

소송사건을 피고 언론사별로 나눈 매체별 빈도 133건으로 매체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일간신문이 42건(31.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터넷매체 36건(27.1%), 방송 35건(26.3%)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간신문 10건(7.5%), 월간지 5건(3.8%) 등이었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37건(88.1%)으로,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이 27건(77.1%)으로 소송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인터넷매체 중에는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20건(55.6%)이었고, 종속형 인터넷신문인 언론사닷컴이 16건(44.4%)이었다.

〈표 1-7〉 매체유형별 빈도

매 체 유 형	빈 도	비 율(%)
일 간 신 문	42	31.6
주 간 신 문	10	7.5
월 간 지	5	3.8
방 송	35	26.3
뉴 스 통 신	3	2.3
인 터 넷 매 체	36	27.1
기 타	2	1.5
합 계	133	100

〈표 1-8〉 일간지 유형별 빈도

일간지 유형	빈 도	비 율(%)
중앙 종합	37	88.1
지역 종합	3	7.1
일반경제	2	4.8
합 계	42	100

〈표 1-9〉 방송유형별 빈도

방송 유형	빈 도	비 율(%)
중 앙	27	77.1
민 방	4	11.4
케 이 블	3	8.6
라 디 오	1	2.9
합 계	35	100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빈도

인터넷매체 유형	빈 도	비 율(%)
인 터 넷 신 문	20	55.6
언 론 사 닷 컴	16	44.4
합 계	36	100

##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 보도유형으로 방송 외 매체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 방송은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절반을 차지

방송매체 35건을 제외한 나머지 98건을 대상으로 소송의 원인이 된 보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80건(81.6%)으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 칼럼이 9건(9.2%), 인터뷰가 3건(3.1%) 등이었다.

소위 의견성 기사라 할 수 있는 사설이나 칼럼, 만평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의 빈도를 모두 합산해본 결과 12건이었다.

한편, 피소된 방송매체 35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시사·고발프로그램 18건(51.4%), 뉴스 13건(37.1%), 교양·정보 3건(8.6%), 드라마 1건(2.9%)이었다.

〈표 1-11〉 보도유형별 빈도(방송 외)

보도유형(방송 외)	빈 도	비 율(%)
스트레이트	80	81.6
스트레이트/사설	1	1.0
스트레이트/사진	1	1.0
스트레이트/칼럼	1	1.0
칼 럼	9	9.2
인 터 뷰	3	3.1
만 평	1	1.0
사 진	2	2.0
합 계	98	100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빈도

보도유형(방송)	빈 도	비 율(%)
뉴 스	13	37.1
시사·고발	18	51.4
교양·정보	3	8.6
드 라 마	1	2.9
합 계	35	100

## 8. 매체별 피고구성

### 언론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아

각 사건의 피고를 매체별로 나눈 133건을 대상으로 피고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언론사가 5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론사/담당이 46건(34.6%)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피고구성을 직위별로 합산하여 살펴보면 언론사가 120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63건(26.9%), 대표이사 20건(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3〉 매체별 피고구성

매체별 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론사	50	37.6
언론사/대표	2	1.5
언론사/대표/국장/담당	2	1.5
언론사/대표/국장/부장/담당	1	0.8
언론사/대표/부장	2	1.5
언론사/대표/담당	2	1.5
언론사/국장/논설	1	0.8
언론사/국장/담당	4	3.0
언론사/국장/담당/비언론	1	0.8
언론사/논설	1	0.8
언론사/부장	3	2.3
언론사/담당	46	34.6
언론사/담당/비언론	1	0.8
언론사/비언론	4	3.0
대표	5	3.8
대표/국장/담당/논설/비언론	2	1.5
대표/담당	2	1.5
대표/부장	2	1.5
담당	2	1.5
합 계	133	100

〈표 1-14〉 매체별 피고구성(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 론 사	120	51.3
대 표 이 사	20	8.5
국 장	11	4.7
논 설 위 원	4	1.7
부 장	8	3.4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63	26.9
비 언 론	8	3.4
합 계	234	100



## 1. 심급별 처리결과

**원고승소율 36.1%, 원고패소율 63.9%**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승소율(원고 일부승소 포함)을 산정해 본 결과, 원고승소율은 36.1%, 원고패소율은 63.9%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27.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인용정도를 살펴보면, 모두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감축 또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판결들의 심급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1심이 33.8%, 항소심이 40.0%, 상고심이 25.0%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2-1〉 심급별 처리결과

심 급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1 심	23 (33.8)	45 (66.2)	68 (100)
항 소 심	12 (40.0)	18 (60.0)	30 (100)
상 고 심	2 (25.0)	6 (75.0)	8 (100)
환송후심	1 (100.0)		1 (100)
재상고심	1 (100.0)		1 (100)
합 계	39 (36.1)	69 (63.9)	108 (100)

※ ( )안의 숫자는 %

##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상소심 92.1%가 원심판결 유지**

항소심 30건과 상고심 8건을 합산한 38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11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4건인 것으로 나타나 상소심 92.1%가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이 반복된 경우는 3건으로 원심판결 반복비율은 7.9%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경우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90.0%였고 원심판결 반복비율은 10.0%였다. 그리고 상고심의 경우 원심판결 유지비율이 100%였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구 분	빈 도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반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반복	원고패소판결 반복
항 소 심	30 (100)	9 (30.0)	18 (60.0)		3 (10.0)
상 고 심	8 (100)	2 (25.0)	6 (75.0)		
합 계	38 (100)	11 (28.9)	24 (63.2)	0 (0.0)	3 (7.9)
		35 (92.1)		3 (7.9)	

※ ( )안의 숫자는 %

### 3. 청구별 처리결과

**반론청구 80.0%, 정정보청구 43.3%, 손해청구 26.8% 원고승소**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들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처리결과를 조사해 보았다. 청구별 원고승소율은 반론보도청구는 8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사삭제청구 60.0%, 정정보도청구 43.3%, 손해배상청구 26.8% 순으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 4건은 기간도과로, 사과문 게재청구 7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기각되었다.

참고로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총 11건이었으나, 그 중 1건은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1)</sup>

〈표 2-3〉 청구별 결과

청 구 명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정정보도	29 (43.3)	38 (56.7)	67 (100)
반론보도	8 (80.0)	2 (20.0)	10 (100)
추후보도		4 (100.0)	4 (100)
손해배상	33 (26.8)	90 (73.2)	123 (100)
기사삭제	3 (60.0)	2 (40.0)	5 (100)
사과문 게재		7 (100.0)	7 (100)
합 계	73 (33.8)	143 (66.2)	216 (100)

※ ( )안의 숫자는 %

1) 대법원 2010. 3. 5. 선고 2009다103165 판결

##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승소율이 31.5%로 나타나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을 집계한 결과, 명예훼손이 31.5%였고, 신용훼손과 초상권 침해는 각각 50.0%로 나타났다. 그 외에 명예와 초상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명예와 음성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된 경우, 초상권 침해와 모욕이 함께 된 경우 등이 100%의 원고 승소율을 나타냈지만 빈도가 너무 적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신용훼손을 인정한 사례로는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쇠가루가 유입되었다고 보도한 사건<sup>2)</sup>, 자동차 오일필터에 형깊이나 실타래가 들어간 불량품이 대량 생산,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한 사건<sup>3)</sup> 등이 있었다.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는 귀성길 교통상황을 전하면서 요금징수원의 초상을 공개한 사건<sup>4)</sup>, 하 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해당 교회 어린이 합창단의 초상과 음성을 공개한 사건<sup>5)</sup> 등이 있었다.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명 예	28 (31.5)	61 (68.5)	89 (100)
명예/초상	1 (100.0)		1 (100)
명예/음성	2 (100.0)		2 (100)
명예/모욕	1 (100.0)		1 (100)
신 용	3 (50.0)	3 (50.0)	6 (100)
초 상	2 (50.0)	2 (50.0)	4 (100)
초상/모욕	1 (100.0)		1 (100)
저 작 권	1 (50.0)	1 (50.0)	2 (100)
기 타		2 (100.0)	2 (100)
합 계	39 (36.1)	69 (63.9)	108 (100)

※ ( )안의 숫자는 %

2)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8나519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가합669 판결

4) 부산지방법원 2010. 3. 26. 선고 2009나18455 판결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4. 선고 2010가합1018 판결

## 5.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일반인 26.5%, 공인 43.3%로 나타나

10건 이상의 빈도를 보인 사건 중 원고유형별 승소율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46.2%로 가장 높았고 공적인 물은 41.2%(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은 43.3%), 일반단체와 기업은 각각 40.0%였으며, 일반인은 26.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언론사는 37.5%였으며, 나머지 원고 유형들은 빈도가 낮아 원고 승소율이 높거나 낮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원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sup>6)</sup>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공 직 자	6 (46.2)	7 (53.8)	13 (100)
공적인물	7 (41.2)	10 (58.8)	17 (100)
일 반 인	9 (26.5)	25 (73.5)	34 (100)
국가기관		1 (100.0)	1 (100)
공공단체	3 (50.0)	3 (50.0)	6 (100)
정 당		1 (100.0)	1 (100)
일반단체	4 (40.0)	6 (60.0)	10 (100)
시민단체		4 (100.0)	4 (100)
종교단체	1 (100.0)		1 (100)
기 업	4 (40.0)	6 (60.0)	10 (100)
언 론 사	3 (37.5)	5 (62.5)	8 (100)
교육기관	2 (66.7)	1 (33.3)	3 (100)
합 계	39 (36.1)	69 (63.9)	108 (100)

※ ( )안의 숫자는 %

6)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7나78304 판결

〈표 2-6〉 공적인물에 대한 결과

공적인물 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정치인	1 (33.3)	2 (66.7)	3 (100)
연예인	2 (100.0)		2 (100)
기업가	2 (50.0)	2 (50.0)	4 (100)
기 타	2 (25.0)	6 (75.0)	8 (100)
합 계	7 (41.2)	10 (58.8)	17 (100)

※ ( )안의 숫자는 %

##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주간신문, 월간지 등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높았으나  
일간신문, 방송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매체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월간지와 기타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승소율이 각각 100%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주간신문이 60.0%, 인터넷매체 41.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간신문은 31.0%, 방송은 28.6%로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32.4%)가 지역종합일간지(33.3%)보다 원고승소율이 0.9% 낮았다. 그리고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25.9%)과 지역민방(25.0%) 둘 다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그 외 인터넷매체 언론사닷컴(68.8%)은 원고승소율이 높았으나 인터넷신문(20.0%)은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표 2-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일간신문	13 (31.0)	29 (69.0)	42 (100)
주간신문	6 (60.0)	4 (40.0)	10 (100)
월 간 지	5 (100.0)		5 (100)
방 송	10 (28.6)	25 (71.4)	35 (100)
뉴스통신		3 (100.0)	3 (100)
인 터 넷	15 (41.7)	21 (58.3)	36 (100)
기 타	2 (100.0)		2 (100)
합 계	51 (38.3)	82 (61.7)	133 (100)

※ ( )안의 숫자는 %

〈표 2-8〉 일간지 처리결과

일간지 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중앙 종합	12 (32.4)	25 (67.6)	37 (100)
지역 종합	1 (33.3)	2 (66.7)	3 (100)
일반경제		2 (100.0)	2 (100)
합 계	13 (31.0)	29 (69.0)	42 (100)

※ ( )안의 숫자는 %

〈표 2-9〉 방송 처리결과

방송 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중앙	7 (25.9)	20 (74.1)	27 (100)
민방	1 (25.0)	3 (75.0)	4 (100)
케이블	2 (66.7)	1 (33.3)	3 (100)
라디오		1 (100.0)	1 (100)
합 계	10 (28.6)	25 (71.4)	35 (100)

※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처리결과

인터넷매체 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인터넷신문	4 (20.0)	16 (80.0)	20 (100)
언론사닷컴	11 (68.8)	5 (31.3)	16 (100)
합 계	15 (41.7)	21 (58.3)	36 (100)

※ ( )안의 숫자는 %

##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스트레이트 기사 대상 원고승소율은 40.0%, 방송 뉴스는 23.1%**

소제기 대상기사의 보도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보도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스트레이트 기사 대상 원고승소율이 40.0%였으며, 방송매체는 뉴스가 23.1%, 시사·고발프로그램이 27.8%

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1〉 보도유형별 처리결과(방송 외)

보도유형(방송 외)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스트레이트	32 (40.0)	48 (60.0)	80 (100)
스트레이트/사설	1 (100.0)		1 (100)
스트레이트/사진	1 (100.0)		1 (100)
스트레이트/칼럼	1 (100.0)		1 (100)
칼 럼	4 (44.4)	5 (55.6)	9 (100)
인터뷰	2 (66.7)	1 (33.3)	3 (100)
만 평		1 (100.0)	1 (100)
사 진		2 (100.0)	2 (100)
합 계	41 (41.8)	57 (58.2)	98 (100)

※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방송)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뉴 스	3 (23.1)	10 (76.9)	13 (100)
시사·고발	5 (27.8)	13 (72.2)	18 (100)
교양·정보	2 (66.7)	1 (33.3)	3 (100)
드 라 마		1 (100.0)	1 (100)
합 계	10 (28.6)	25 (71.4)	35 (100)

※ ( )안의 숫자는 %



## 제4장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건수를 언론사별로 나눈 후에, 이를 다시 청구별로 분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합산하면 123건이다. 이 123건을 대상으로 원고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 1.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승소율은 26.8%**

손해배상청구사건 123건 중 원고 일부승소한 사건은 33건으로 원고승소율은 26.8%로 나타났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123 (100.0)	33 (26.8)	90 (73.2)

### 2. 청구액

**손해배상 청구액의 평균액은 4억 2,133만원, 중앙액은 5,000만원**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의 다소를 살펴보았다. 빈도가 매우 적은 최고액 또는 최저액으로 인해 평균액이 많이 상승 또는 감소하는 경우 평균액으로 중심 경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중앙액과 최빈액을 함께 조사하였다. 중앙액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액을 말한다. 최빈액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한다.

청구액과 인용액은 원고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 각 원고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이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한 매체별 금액 기준이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에 합산하였다.

분석결과, 청구액 평균은 4억 2,133만원이었고, 중앙액은 5,000만원, 최빈액은 3,000만원, 최저액은 25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인 억대의 청구가 전체 손해배상청구 123건 중 58건(47.2%)을 차지하였고, 최고 청구액은 200억원이었다.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청구액 (원) 빈 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123	421,332,098	50,000,000	30,000,000	2,500,000	20,000,000,000

### 3. 인용액

####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액은 2,424만원, 중앙액은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33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은 2,424만원, 중앙액은 1,000만원으로 평균액이 중앙액의 2.4배 정도였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인 최빈액은 1,000만원이었다.

위자료 인용 최고액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췌가루가 유입되었다고 보도한 사건<sup>7)</sup>으로서 1억원이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33건 중 항소심 판결은 8건이고 상고심 판결은 3건이었다. 위 상소심 11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인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1건 중 원고 원심 패소판결을 번복하여 손해배상을 새롭게 명한 2건을 제외한 9건의 경우, 원심 인용액을 증액한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건의 경우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lt;표 3-3&gt; 손해배상 인용액

인용액 (원) 빈 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 4. 인용액 분포

##### 손해배상 인용액은 5백만원 이하가 30.3%로 가장 많아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를 보면 5백만원 이하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상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되 1천만원 범위 내인 경우가 24.2%로 나타났다.

&lt;표 3-4&gt;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인용액 (원) 빈 도	5백만 이하	5백만 초과 ~1천만	1천만 초과 ~2천만	2천만 초과 ~5천만	5천만 초과 ~1억
33 (100)	10 (30.3)	8 (24.2)	7 (21.2)	1 (3.0)	7 (21.2)

※ ( )안의 숫자는 %

#### 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명예훼손의 경우 인용액의 평균액은 2,632만원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빈도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이 21.4%로 비교적 낮았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명예훼손이 2,632만원이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와 모욕이 함께 된 경우가 6,3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용훼손이 4,000만원으로 비교적 높았다.

&lt;표 3-5&gt; 손해배상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명 예	103	22	21.4	26,318,182
명예/초상	1	1	100.0	15,000,000

침해유형	빈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명예/음성	2	2	100.0	1,000,000
명예/모욕	1	1	100.0	5,000,000
신용	6	3	50.0	40,000,000
초상	5	2	40.0	2,000,000
초상/모욕	1	1	100.0	63,000,000
저작권	2	1	50.0	12,000,000
기타	2	0	0	0
합계	123	33	26.8	24,242,424

##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의 경우 인용액의 평균액이 2,189만원, 공인의 경우 1,250만원**

원고유형별 승소율(빈도 5건 이하는 제외)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언론사는 5.9%에 그쳤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개인의 경우 일반인이 2,189만원으로 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의 1,250만원보다 939만원 높았다. 공인 중에는 공직자가 1,333만원이었고, 공적인물은 1,125만원이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 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이 3,750만원으로 비교적 높았다.

〈표 3-6〉 손해배상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빈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개 인	공 직 자	20	6	30.0	13,333,333
	공적인물	16	4	25.0	11,250,000
	일 반 인	35	9	25.7	21,888,889
단 체	공공단체	5	1	20.0	6,000,000
	정 당	1	0	0	0
	일반단체	11	3	27.3	8,333,333
	시민단체	4	0	0	0
	종교단체	1	1	100.0	5,000,000
	기 업	9	4	44.4	37,500,000
	언 론 사	17	1	5.9	12,000,000
	교육기관	4	4	100.0	70,000,000
합 계	123	33	26.8	24,242,424	

〈표 3-7〉 공적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유형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정치인	2	0	0	0
연예인	2	2	100.0	10,000,000
기업가	3	1	33.3	10,000,000
기타 유명인	9	1	11.1	15,000,000
합 계	16	4	25.0	11,250,000

##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중앙종합일간지의 경우 인용액의 평균액이 5,160만원으로 가장 높아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가 14.7%, 중앙방송이 24.0%, 인터넷매체가 22.6%였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중앙종합일간지가 5,16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 5,000만원, 케이블TV 3,300만원, 중앙방송 2,367만원, 주간신문 1,533만원, 인터넷매체 1,071만원 순이었다.

〈표 3-8〉 손해배상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인용액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일 간	중앙종합		34	5	14.7	51,600,000
	지역종합		3	1	33.3	6,000,000
	일반경제		2	0	0	0
	소 계		39	6	15.4	44,000,000
방 송	중 앙		25	6	24.0	23,666,667
	민 방		4	1	25.0	1,000,000
	케 이 블		3	2	66.7	33,000,000
	라 디 오		1	0	0	0
	소 계		33	9	27.3	23,222,222
주 간		10	6	60.0	15,333,333	
월 간		5	3	60.0	50,000,000	
뉴스통신		3	0	0	0	
인 터 넷		31	7	22.6	10,714,286	
기 타		2	2	100.0	5,000,000	
합 계		123	33	26.8	24,242,424	

※ ( )안의 숫자는 %

##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율은 74.7%로 전체 피고승소율보다 약간 높아**

손해배상청구사건 123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79건(64.2%)을 차지하였다. 이 중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빈도는 59건으로 언론인 승소율은 74.7%였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사건 전체 피고 승소율 73.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 3-9〉 손해배상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청구빈도	언론인 피고 사건	처리 결과	
		언론인 승	언론인 패
123	79 (100)	59 (74.7)	20 (25.3)

※ ( )안의 숫자는 %

## 9.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70.0%**

언론사건에서는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이다.

손해배상청구 중 기각(원고 패소)된 90건의 기각사유를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이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보도의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되어 기각한 경우가 63건(70.0%)이었다.

또, 기각 사유에 적법한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는 11건이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각한 경우는 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이익형량을 통해 피해자의 법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경우가 3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기각한 경우가 7건 있었다.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기각 사유	빈 도	비 율(%)
진실성	23	25.6
진실성/상당성	8	8.9
진실성/상당성/적법의견	1	1.1
진실성/적법의견	3	3.3
상당성	28	31.1
적법의견	5	5.6
적법의견/평가저하 아님	2	2.2
평가저하 아님	1	1.1
동 의	1	1.1
이익형량에 의한 공익 우선	3	3.3
불특정	8	8.9
소멸시효기간 경과	7	7.8
합 계	90	100

##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 1.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처리결과

#### 정정보도청구의 원고승소율은 43.3%

정정보도청구사건 67건 중 원고가 일부승소한 사건은 29건으로 원고승소율은 43.3%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빈도는 4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1〉 정정보도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67 (100.0)	29 (43.3)	38 (56.7)

※ ( )안의 숫자는 %

### 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 진실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81.1%로 대다수를 차지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성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가 30건(81.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기각된 37건 외에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사건이 1건 있었다.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기 각 사유	빈 도	비 율(%)
진실성	28	75.7
진실성/적법의견	2	5.4
적법의견	1	2.7
평가저하 아님	1	2.7
불특정	1	2.7
기 타	4	10.8
합 계	37	100

### 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원고승소율은 80.0%

반론보도청구사건 11건 중에 예비적 청구로 심리를 받지 않은 1건을 제외한 10건 중 원고가 일부승소한 사건은 8건으로 원고승소율은 80.0%로 나타났다. 이 중 반론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1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10 (100)	8 (80.0)	2 (20.0)

※ ( )안의 숫자는 %

###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반론보도청구사건 중 기각된 사건은 2건으로, 법원은 원 보도내용이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하였다.

###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2010년 법원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를 명한 사건은 31건이다. 이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11건, 인터넷매체 8건, 월간지 5건, 방송 3건 등으로 나타났고, 인용한 보도별로 분류하면 정정보도 23건, 반론보도 2건, 정정 및 반론보도가 6건<sup>8)</sup>이었다.

언론중재법 제27조(재판) 제2항은 법원은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게재 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 주문 상의 보도문의 보도위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등을 조사해 보았다.

8) ‘정정 및 반론보도문’ 형식이 5건이었고, ‘정정보도문’ 과 ‘반론보도문’ 을 각각 명한 형식이 1건이었다.

〈표 4-4〉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빈도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	계
일 간	8	2	1	11
주 간	1		1	2
월 간	4		1	5
방 송	2		1	3
인터넷매체	6		2	8
기 타	2			2
합 계	23	2	6	31

가.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원보도와 같은 지면(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64.5%**  
**비중있는 위치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9.7%**

정정보도등의 위치가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20건(64.5%)이었고,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7건(22.6%)이었다. 그 밖에 주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4건(12.9%)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6항은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위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이 2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1건으로 총 3건(9.7%)이 비중있는 위치에 보도하도록 명하였다.

〈표 4-5〉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빈 도	비 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20	64.5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7	22.6
명시하지 않음	4	12.9
합 계	31	100

〈표 4-6〉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구 분	보 도 위 치	빈 도	비 율(%)
정기간행물	1면	2	6.5
	1면외	15	48.4
방 송	첫머리	1	3.2
인 터 넷	제목은 메인에 게시하고 내용은 하이퍼링크	6	19.4
공 통	명시하지 않음	7	22.6
	합 계	31	10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 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이,  
보도본문의 길이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가장 많아**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 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으로 달도록 한 것이 19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 형식이 5건(16.1%), '...에 대한 정정보도문' 형식이 4건(12.9%) 등의 순이었다.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이하, 400자 초과 500자 이하가 각각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초과 400자 이하, 700자 초과가 각각 6건(19.4%)으로 나타났다.

〈표 4-7〉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빈 도	비 율(%)
정정보도문	18	58.1
정정 및 반론보도문	5	16.1
반론보도문	1	3.2
...에 대한 정정보도문	4	12.9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1	3.2
바로잡습니다	1	3.2
기 타	1	3.2
합 계	31	100

〈표 4-8〉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빈 도	비 율(%)
300자 이하	9	29.0
301~400자	6	19.4
401~500자	9	29.0
501~600자	1	3.2
700자 초과	6	19.4
합 계	31	100

##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 1. 조정신청 비율

#### 5건 중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

매체별 소송건 133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217건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분석대상 판결의 언론조정신청 비율을 산정해보았다.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은 20.7%로 대략 5건에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청구권별로 보면, 기사삭제청구가 6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반론보도청구 54.5%, 정정보도청구 26.9%, 손해배상청구 14.6%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5-1〉 조정신청 비율

청 구 명	소송빈도	조정신청건수	조정신청 비율(%)
정 정보도	67	18	26.9
반 론 보도	11	6	54.5
추 후 보도	4	0	0
손 해 배 상	123	18	14.6
기 사 삭 제	5	3	60.0
사과문 게재	7	0	0
합 계	217	45	20.7

###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58.8%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 45건을 대상으로 조정결과와 판결결과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위원회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34건의 경우, 원고승소는 20건(58.8%)이고 원고패소는 14건(41.2%)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는 원고승소율이 85.7%로 상당히

높았다.

한편,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던 11건의 경우, 원고승소가 3건이었고 원고패소가 8건이었다.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조정 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직권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7	6	1
		피신청인 이의신청	16	7	9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11	7	4
		조정불성립결정	11	3	8
합		계	45	23	22

### 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은 법원에 비해 약 1/13 수준

2010년 한 해,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인용액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은 183만원으로 법원 인용액의 평균액 2,424만원의 약 1/13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조정액의 중앙액은 100만원으로 법원 인용액의 중앙액 1,000만원의 1/10 수준이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같은 청구사건에 대해 판단한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분석해야 하나, 이번 분석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청구사건을 각자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30	1,832,759	1,000,000	1,000,000	150,000	15,000,000
인용액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108건)

(선고일 순)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10-01-05	2008가단423259	서울중앙	1심	손배	권○○	기각
2	2010-01-08	2009가단6572	광주지방법 순천지원	1심	손배	광양만뉴스(주) 외 1명	인용
3	2010-01-13	2007나78304	서울고등	2심	손배	오연호 외 4명	기각
4	2010-01-13	2009나28082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한겨레신문(주)	인용
5	2010-01-13	2009나28099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1명	기각
6	2010-01-13	2009나32135	서울고등	2심	손배	(주)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7	2010-01-19	2009가합1607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기각
8	2010-01-19	2009가합1710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9	2010-01-20	2009가단304348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10	2010-01-26	2009가합670, 1635(병합)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사과	(주)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1	2010-01-26	2009가합24416	서울남부	1심	정정	한국방송공사	기각
12	2010-01-26	2009가합25327	서울남부	1심	손배	최○○ 외 1명	인용
13	2010-01-27	2009나24813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4	2010-01-27	2008나113006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사과	김○○ 외 3명	인용
15	2010-01-27	2009가합81994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16	2010-02-03	2009가합25635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에스비에스 외 1명	인용
17	2010-02-09	2009가합17586	서울남부	1심	손배	(주) 문화방송 외 6명	기각
18	2010-02-10	2008나11246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외 3명	기각
19	2010-02-11	2009나1936	서울남부	2심	손배	강○○ 외 1명	기각
20	2010-02-11	2009나4775	서울남부	2심	손배	황○○	기각
21	2010-02-12	2009가합4694	인천지방법 부천지원	1심	정정/손배	유○○ 외 1명	기각/각하
22	2010-02-16	2008가단96240	서울남부	1심	손배	(주) 대구방송 외 4명	기각
23	2010-02-17	2009가합518	의정부지방법 고양지원	1심	정정/손배	(주) 창비 외 1명	인용
24	2010-02-17	2009가단168078	서울중앙	1심	손배	신○○ 외 2명	인용
25	2010-03-05	2009다103165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사) 목요학술회 외 2명	인용
26	2010-03-17	2009가합10934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와이티엔 외 1명	기각
27	2010-03-19	2009나30068	서울중앙	2심	손배	(주) 세계일보 외 1명	기각
28	2010-03-24	2009가합25116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주) 중앙일보사 외 2명	인용
29	2010-03-26	2009가합8789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부산일보(주) 외 1명	기각
30	2010-03-26	2009나18455	부산지방법	2심	손배	(주) 케이엔엔	인용
31	2010-04-01	2009나7422	서울남부	2심	손배	(주) 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32	2010-04-06	2009가합5173	대구지방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33	2010-04-14	2009가합14317	서울동부	1심	손배	이○○	기각
34	2010-04-21	2008나51993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사	인용
35	2010-04-27	2009가합13485	서울남부	1심	손배	(주) 문화방송	기각
36	2010-04-29	2009가합41729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매경닷컴 외 1명	기각
37	2010-05-11	2009가합22946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주) 문화방송	인용
38	2010-05-11	2009가합20452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황○○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39	2010-05-12	2009나61850	서울고등	2심	반론	(주) 문화일보	인용
40	2010-05-12	2009나52641	서울고등	2심	손배	(주) 독립신문사 외 1명	인용
41	2010-05-20	2009나44456	서울중앙	2심	손배	김○○ 외 1명	기각
42	2010-05-26	2009나4147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명	기각
43	2010-05-27	2010다20174	대법원	3심	정정/손배/사과	김○○ 외 3명	인용
44	2010-06-03	2009가합116678	서울중앙	1심	정정	(주) 데일리팜	기각
45	2010-06-03	2009가합135662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데일리팜	기각
46	2010-06-09	2009나82949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동아일보사	인용
47	2010-06-09	2009나118411	서울고등	2심	손배	(주) 아파트라이프 외 1명	인용
48	2010-06-10	2010다8341, 8358(병합)	대법원	3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49	2010-06-16	2009가합76350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전주방송 외 4명	기각
50	2010-06-23	2009나677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51	2010-06-23	2009나6785, 6792(병합)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재) 씨비에스 외 4명	기각
52	2010-06-23	2008나63491	서울고등	2심	기사삭제	(주) 씨비에스아이	인용
53	2010-06-24	2010다26592	대법원	3심	손배	강○○ 외 1명	기각
54	2010-06-24	2010다26608	대법원	3심	손배	황○○	기각
55	2010-06-30	2009가합89356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대구신문사 외 2명	기각
56	2010-06-30	2010나7224	서울중앙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57	2010-07-01	2009나102614	서울고등	환송후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인용
58	2010-07-07	2009가합129834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중앙일보사 외 7명	기각
59	2010-07-13	2009가단100454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문화방송	기각
60	2010-07-14	2009가합37997	서울중앙	1심	정정	(주) 중앙일보사 외 1명	기각
61	2010-07-14	2008가합48235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5명	인용
62	2010-07-14	2009가합112263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겨레신문 (주) 외 1명	기각
63	2010-07-14	2010가합22472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토요경제신문 외 2명	인용
64	2010-08-11	2009가합14072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대한민국 외 3명	기각
65	2010-08-17	2009가단24495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기각
66	2010-08-19	2010다46909	대법원	3심	손배	김○○ 외 1명	기각
67	2010-09-08	2009가합19761	인천지방	1심	정정/손배	(주) 연수송도신문	인용
68	2010-09-08	2010가단13045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손배	(주) 기독교텔레비전	인용
69	2010-09-14	2010가합669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외 1명	인용
70	2010-09-15	2009가합14709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동아일보사	인용
71	2010-09-15	2010나23366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72	2010-09-17	2009가단276740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조선일보사	기각
73	2010-09-30	2010다53938	대법원	3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74	2010-10-01	2010가합320	청주지방	1심	손배	(주) 에이치씨엔총력방송 외 2명	기각
75	2010-10-06	2010가합33666, 33649(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 중앙일보사 외 1명	인용
76	2010-10-20	2010나47300	서울고등	2심	손배	(주) 문화방송	기각
77	2010-10-27	2010가단8746	인천지방	1심	손배	인천신문 외 3명	인용
78	2010-11-04	2010가합1018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정정/손배/사과	(주) 기독교텔레비전	인용
79	2010-11-05	2009가단374781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80	2010-11-10	2009가합13912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81	2010-11-10	2010가합6272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중앙일보사 외 2명	기각
82	2010-11-10	2010가합12666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주) 중앙일보사 외 1명	기각
83	2010-11-10	2010가합16095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주) 매일경제 외 1명	기각
84	2011-11-11	2010다67449	대법원	재상고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인용
85	2010-11-16	2010나28283	서울중앙	2심	손배	(주) 문화방송	기각
86	2010-11-17	2009나115634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 씨에스뉴스프레스 외 1명	인용
87	2010-11-17	2010가단20487	수원지방법 성남지원	1심	손배	기독교대한감리회 외 1명	인용
88	2010-11-24	2010가합19216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주) 경향신문사	인용
89	2010-11-25	2009가단300209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조선일보사	기각
90	2010-11-25	2010다60943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 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91	2010-11-30	2009가합28654	서울남부	1심	손배	박○○ 외 1명	인용
92	2010-12-01	2010나3489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참비	인용
93	2010-12-08	2010가합6273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94	2010-12-15	2010가합19209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	(주) 경향닷컴	인용
95	2010-12-15	2010나31374	서울고등	2심	손배	최○○ 외 1명	인용
96	2010-12-15	2010가합2973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주) 씨에스뉴스프레스 외 1명	인용
97	2010-12-15	2010가합1612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한국일보사 외 1명	기각
98	2010-12-15	2009가합14234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99	2010-12-15	2010가합12673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연합뉴스 외 1명	기각
100	2010-12-15	2010나66929	서울고등	2심	손배	(주) 중앙일보사 외 7명	기각
101	2010-12-22	2010가합5417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노컷뉴스 외 1명	기각
102	2010-12-22	2010가합5690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아시아경제신문사 외 1명	기각
103	2010-12-22	2010가합8438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경향신문사 외 5명	인용
104	2010-12-22	2010가합48351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주) 법률신문사	기각
105	2010-12-22	2010가합5418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연합뉴스 외 1명	기각
106	2010-12-22	2010가합54196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주) 뉴스외 외 1명	기각
107	2010-12-29	2010가합4800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일요서울신문사 외 2명	기각
108	2010-12-29	2010가합79614	서울중앙	1심	손배/사과	신○○ 외 1명	인용